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◈

□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.

○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

○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균형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특히, 도시화 및 택지개발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처 하고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취득재산현황

(단위 : ㎡, 백만원)

사 업 명	구분	취 득 예 정 재 산			예 정 가 액		
		소 재 지	부지 면적	건축면적	계	부지	건축
회천4동 어린이집	변경전	율정동 산24-2	1,650	330	700	250	450
	변경후	계	1,322	330	733	283	450
		율정동 400-16	1,142				
		율정동 401	180				

【검토의견】

□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

○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보육수급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

○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되,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와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수급조절에 문제는 없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.

○ 본 관리계획은 2005년 10월 26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, 토지 매입을 추진중 토지 소유자인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

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관리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

○ 보육시설설치에 따른 제약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·검토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